**「사회복지법」**

[법률 소화26<1951>년제45호, 2017.6.2. 최종개정]

**□ 개 요**

일본의 사회복지법(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본 사회복지의 목적·이념·원칙과 대상자별 각 사회복지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의 공통적인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총 12장 134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 차**

|  |  |
| --- | --- |
| **원문** | **번역문** |
| **第一章 総則**  **第二章 地方社会福祉審議会**  **第三章 福祉に関する事務所**  **第四章 社会福祉主事**  **第五章 指導監督及び訓練**  **第六章 社会福祉法人**  第一節 通則  第二節 設立  第三節 機関  第一款 機関の設置  第二款 評議員等の選任及び解任  第三款 評議員及び評議員会  第四款 理事及び理事会  第五款 監事  第六款 会計監査人  第七款 役員等の損害賠償責任  第四節 計算  第一款 会計の原則等  第二款 会計帳簿  第三款 計算書類等  第五節 定款の変更  第六節 解散及び清算並びに合併  第一款 解散  第二款 清算  第一目 清算の開始  第二目 清算法人の機関  第三目 財産目録等  第四目 債務の弁済等  第五目 残余財産の帰属  第六目 清算事務の終了等  第三款 合併  第一目 通則  第二目 吸収合併  第三目 新設合併  第四目 合併の無効の訴え  第七節 社会福祉充実計画  第八節 助成及び監督  **第七章 社会福祉事業**  **第八章 福祉サービスの適切な利用**  第一節 情報の提供等  第二節 福祉サービスの利用の援助等  第三節 社会福祉を目的とする事業を経営する者への支援  **第九章 社会福祉事業等に従事する者の確保の促進**  第一節 基本指針等  第二節 福祉人材センター  第一款 都道府県福祉人材センター  第二款 中央福祉人材センター  第三節 福利厚生センター  **第十章 地域福祉の推進**  第一節 包括的な支援体制の整備  第二節 地域福祉計画  第三節 社会福祉協議会  第四節 共同募金  **第十一章 雑則**  **第十二章 罰則**  **附則** |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사회복지심의회**  **제3장 복지에 관한 사무소**  **제4장 사회복지주사**  **제5장 지도감독 및 훈련**  **제6장 사회복지법인**  제1절 통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1관 기관의 설치  제2관 평의원 등의 선임 및 해임  제3관 평의원 및 평의원회  제4관 이사 및 이사회  제5관 감사  제6관 회계감사인  제7관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절 계산  제1관 회계의 원칙 등  제2관 회계장부  제3관 계산서류 등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해산 및 청산, 합병  제1관 해산  제2관 청산  제1목 청산의 개시  제2목 청산법인기관  제3목 재산목록 등  제4목 채무의 변제 등  제5목 잔여재산의 귀속  제6목 청산사무의 종료 등  제3관 합병  제1목 통칙  제2목 흡수합병  제3목 신설합병  제4목 합병 무효 소송  제7절 사회복지충실계획  제8절 조성 및 감독  **제7장 사회복지사업**  **제8장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제1절 정보의 제공 등  제2절 복지 서비스의 이용 원조 등  제3절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경영자에 대한 지원  **제9장 사회복지사업 등의 종사자 확보의 촉진**  제1절 기본지침 등  제2절 복지인재센터  제1관 도도부현 복지인재센터  제2관 중앙 복지인재센터  제3절 복리후생센터  **제10장 지역복지의 추진**  제1절 포괄적인 지원체제의 정비  제2절 지역복지계획  제3절 사회복지협의회  제4절 공동모금  **제11장 잡칙**  **제12장 벌칙**  **부칙** |